

『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5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이선우, 김낙관, 김영길, 김재우, 안주찬, 이지연 의원 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6월 7일

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선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1조)
- 소송비 지원 기준 등(안 별표 1, 별표 2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군

-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소송비용 지원의 적용범위를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고, 제5조~11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신중한 지원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음.
- 한편 의원의 소송비 지원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한하는 것이지 고의·과실 및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, 안 제4조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장이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별표 1 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은 민사소송, 형사소송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타 시군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임.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지난 2022. 1. 13. 전면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면책특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 소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의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